

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

☐ 법령명

-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6. 7. 31.

법 제 처

관보시스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요청 시 법제처와 협의한
입법예고기간을 엄수해 주시고, 입법예고기간 등 협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
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제처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단축 사유(인사혁신처)

- 조속한 개정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 -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것이며,
 -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(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)에 해당함
 - 따라서 이번 『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』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단축하고자 함
- '26년 수시직제 증원사항 반영(별표1, 별표 1의2)
 - 개인정보 유출·침해,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 증원(+6급2명)
- 향후 일정
 - 관계부처 의견조회('26. 8. 7. ~ '26. 8. 18.)
 - 공포('26. 8. 28.)
- 입법예고기간 : 7일간('26. 8. 7. ~ '26. 8. 14.)

□ 검토 의견(법제처)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르면,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,
 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개인정보 유출·침해,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 2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.

○ 위 개정 주요내용은 행정조직과 기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.

○ 입법예고기간 : 7일간